"'유령아동' 방지 출생통보제 도입해야"

세이브더칠드런 등 아동단체 21곳, 공동 성명서

"출생신고 부모에만 맡겨…의료기관 신고해야"

정부가 지난해 처음실시한 '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학대 사례가 발견되자 아동이 출생과 즉시 신고될 수 있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세이브더칠드런 등 아동 단체 21곳은 19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유엔아동권리협약 7조는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돼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대한민국의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척이 없는 사이 우리는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아이들을 놓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원주의 한 부모가 자녀 셋에 대한 육아 책임을 방기했으며 이로 인해 아동 둘이 생후 1년도 되지 않아 사망해 유기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아동단체들은 "출생신고조차 안 된 '유령아동'이었던 셋째는 생존자인 첫째 아동이 아니었다면 존재도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리는 그 죽음을 언제까지 목도하기만 할 것인가"라고 자문했다.

이들은 의료기관이 출생신고에 관여하지 않고 출생신고의 의무를 부모에게만 맡겨두는 현행 출생신고제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 대안으로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아동들을 누락 없이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내세웠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누락 없는 출생등록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통해 위기 아동 발굴 및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동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지지부진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월드비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육영재단,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탁틴내일, 푸른나무재단,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홀트아동복지회,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등의 단체가 참여했다.

"다스 MB것 맞고, 삼성뇌물 27억 늘어" 항소심 징역 17년

1심보다 징역 2년 늘어…보석 취소돼 법정구속 다시수감

"대통령 의무 저버리고 뇌물…책임 회피 모습 안타까워"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79)이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이 징역 2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8년 10월 1심 선고 이후 1년4개월 만에 2심 결론이 나온 셈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등 공직자가 재임 중 행위로 뇌물 혐의를 받을 경우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으로 비자금 조성, 다스 법인카드 사용 등 1심에서 인정한 약 247억원을 모두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더 나아가 2심은 1심에서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한 5억원 부분에 대해 추가로 인정해 2심에서 인정된 총 횡령액은 252억원으로 늘어났다.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뇌물로 인정됐다. 1심에서는 61억8000만원이 유죄로 인정됐는데, 2심에서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아 추가 기소한 것까지 합쳐 총 약 119억원 중 약 89억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뇌물액이 1심보다 27억2000만원 증가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19억123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16억123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16억원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 1230만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또 이 전 회장 연임과 관련해 3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보다 1억원 적은 2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김소남 전 의원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해서 사전수뢰죄가 적용된 1심과 달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다. 다스 횡령액과 삼성 뇌물액, 이 회장과 김 전 의원 등 뇌물액 관련 부분에서 1심 판단과 달라진 점이 있지만, 큰 틀에서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양형에 대해 "피고인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본인은 뇌물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감시·감독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집행해 국가기관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러나 지위에 따른 의무를 저버리고 사인, 공무원,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부정한 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과 다스가 받은 뇌물 총액은 약 94억원에 달해 액수가 막대하다"며 "또 뇌물 수수 방법이 외국 회사를 이용하건, 제3자를 통하는 걸로 그 수법이 은밀해 잘 노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삼성그룹 측이 다스에 있는 제3자 뇌물수수 범행에서 피고인의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더 나아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에 삼성그룹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정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특별사면권을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의 책임이 분명한 데 범행을 부인하고 다스의 직원과 공무원들, 삼성그룹 직원의 책임을 돌리는 등 반성과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점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단신 ●

불법 멸치조업으로 11억 챙긴 선장

완도해양경찰서는 다른 선박의 어선표지판을 불법으로 부착하고 멸치 조업한 혐의(공기호부정사용 등)로 A씨(53)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의 연안선망어선에 다른 선박의 어선표지판을 불법으로 부착하고 무허가 조업을 하는 등 총 143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멸치조업해 약 11억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기간 면세경유 5만2500 *l*, 750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택시 받고 전복된 쏘렌토, 다른 택시에 받혀

광주 서부경찰서는 19일 갓길에 정차하려는 택시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50)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13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4차로 도로에서 쏘렌토 차량을 몰다 택시를 받고 전복, 옆 차로의 또 다른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3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택시에 승객은 타고 있지 않았다.

조사 결과 3차로를 주행하던 택시가 갓길에 정차를 하기 위해 4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A씨가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택시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A씨가 몰던 쏘렌토가 2차로와 3차로에서 전복됐고 2차로를 달리던 또 다른 택시가 A씨의 차량과 충돌했다.

만취해 운전대 잡은 40대 주차된 차 들이받아

광주 서부경찰서는 19일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43)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광주 서구 한 번화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차된 차에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고, A씨 차에도 동승자는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0%로 면허취소수치로 조사됐다.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확정

늦은 밤에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53)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월12일 밤 8시35분쯤 경기 화성시의 한 편도 3차로 도로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A씨(54)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었다.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결국 숨졌고 황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사고가 난 곳이 인적이 드문 곳이라거나 보행자의 존재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곳이라 보기 어렵다. 근처에 가로등과 옥외광고물 조명이 있어 비교적 원거리에서도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황씨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유죄를 인정해 금고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고가 일어난 시간이 야간이고 A씨가 검정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어 황씨가 무단횡단하는 A씨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황씨의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사고 직전에야 비로소 A씨 모습이 확인되고, 사고 당시 황씨는 어떤 내용의 교통법규도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